연산 하늘채 엘센트로 근린생활시설 모집공고

HANULCHE

■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: 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, 제 62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과 분양신고 – 53808호 (2022.11.10.) 로 분양신고

■ 신청자는 공급공고, 정보지, 설명서 등을 숙지하고 청약접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

■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해당 현장을 방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.

■ 접포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(접포관리,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과 인 · 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람.

■ 공급위치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8-1

■ 공급대상물
- 대지면적 : 시업부지 7,555.90㎡ 중 근린생활시설 49.74㎡
- 건축물 연면적 : 71,805.1768㎡ (근린생활시설 : 472.7993㎡)
- 공급규모 : 지하 4층 ~ 지상 36층 4개동 중 근린생활시설 1개동, 1층 총 6호실 중 조합원 물량 2호실 제외한 일반분양 6호실
- 주차대수 : 총 506대 (아파트 및 오피스텔 501대, 근린생활시설 5대)

■ 건축물의 용도 : 공동주택(아파트), 업무시설(오피스텔), 근린생활시설

■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
-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 해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: 일반상업지역, 준주거지역, 방화지구
- "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, 제2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: 교육환경보호구역(상대정화구역)

■ 입점예정일(준공(예정)일) : 2025년 06월 예정정혜한 입점일자는 추후 통보함)

■ 건축물 층별 용도

구분	용도
지하 4층	주차장(아파트), 기전실 등
지하 3층	주차장(아파트)
지하 2층	주차장(아파트), 기전실 등
지하 1층	주차장(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)
지상 1층	근린생활시설, 어린이집, 경비실
지상 2층 ~ 지상 27층	아파트

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, 납부일정

■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(단위 : ㎡)

동	층	호실	전용 면적	공용 면적			계약 면적	대지 지분
				복도, 계단, 화장실	주차장	소 계		
101동	1	101	46.1175	4.7300	8.3319	13.0669	59.1844	6.2264
	1	102	49.8721	5.1205	9.0102	14.1307	64.0028	6.7333
	1	103	49.8007	5.1132	8.9973	14.1105	63.9112	6.7237
	1	104	49.8830	5.1216	9.0122	14.1338	64.0168	6.7348
	1	105	39.7634	4.0826	7.1839	11.2665	51.0299	5.3685
	1	106	39.6063	4.0665	7.1555	11.2220	50.8283	5.3473

※ 상기 대지면적의 경우 준공시점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도 있음.

(단위 : 원, 부가가치세 포함)

동	층	호실	공급금액				계약금10%	중도금 10%	잔금 80%
			대지비	건축비	부가가치세	계	계약 시	2023.03.15	입점지정기간
101동	1	101	193,000,000	344,550,000	34,450,000	572,000,000	57,200,000	57,200,000	457,600,000
	1	102	221,000,000	394,370,000	39,430,000	654,800,000	65,480,000	65,480,000	523,840,000
	1	103	221,000,000	393,460,000	39,340,000	653,800,000	65,380,000	65,380,000	523,040,000
	1	104	221,000,000	394,460,000	39,440,000	654,900,000	65,490,000	65,490,000	523,920,000
	1	105	176,000,000	314,640,000	31,460,000	522,100,000	52,210,000	52,210,000	417,680,000
	1	106	176,000,000	312,730,000	31,270,000	520,000,000	52,000,000	52,000,000	416,000,000

■ 공통 유의사항

- 상기 분양금액은 층, 위치,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상기 분양금액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, 소유권 이전등기비용, 취득세,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.
- 상기 분양대금은 각 호실 면적, 위치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청약 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.
-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의 각 해당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근린생활시설의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,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고 반올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동구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·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할 한 연체료 납부 시 토 ·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.
-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수시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본 근린생활시설의 호수표는 계약자가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작성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,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작성 납부하여야 함.
- 분양계약자는 시업자해의 부도, 파산 등으로 보증시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업자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가 되는 것으로 간주함.
-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등 관련법령에 따름.

■ 근린생활시설 공급용도

용 도	업 종 예 시
근 린 생활시설	– 제1종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 일용품(식품, 잡화, 의류, 완구, 서적, 연초제품 등)등의 소매점,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이용원, 세탁소(공장이 부설 된 것을 제외), 의원, 탁구장, 체육도장 등. – 제2종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기원, 휴게음식점(300㎡이상일 때는 지하나 또는 2층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업소, 결혼상담소 등 가까우며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음. – 기타,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업종을 참조 바람 단,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, 총포판매소,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, 종교시설 등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및 환경 위해시설 또는 위험, 혐오시설 입종은 제외함.

※ 상기 근린생활시설 공급용도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시한 것임.

※ 업종별 인 · 허가 여부 시행령정 인 · 허가에 따른 면적 제한기준 및 각종 전기, 정화조 등 설비기준, 연결별 영업 가능 용도 등 등은 상기 입찰 및 분양계약 전에 신청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 신고 등에 어려움는 제한하여 (전기 · 수도 검침 분리계량등을 포함 제한되어 분양되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※ 각 호실별 시설용도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확인 후 입증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해당 시설을 분양하기 입증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전적으로 고려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.

Ⅱ 청약신청 및 방법

■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- 최초 모집공고일(2021.10.8)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(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) 또는 법인에 한함
- 가주거자 및 청약 통장 가입자에만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함.
- 당 근린생활시설의 청약접수는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로 진행하며,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.
- 청약자(청약 1인당 호실별 1건씩 접수 청약 신청분이 당첨으로 판정 될이후에 대하여 시업주체 본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.
-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(2022.11.10.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되고로 동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
- 시청 접수 시는 해는 본인에게 있으며 시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.
- 당첨자 발표는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함
- 예탁금청약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,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수의계약으로 임의 공급함.
- 청약접수자의 청약신청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.
- 닉명 시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. (단,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의 오류 및 환불불가 계정일 경우 시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)

■ 추첨 및 당첨자 발표

- 일시 : 공개추첨 및 당첨자 발표 2022.11.15. 17:30
- 장소 : 당시 견본주택 내
- 당첨자 선정 : 당첨자 및 순번은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결정, 추첨은 전문상담원 영상 촬영 후 견본주택에서 브리핑
- 당첨자 확인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,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.

■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

- 환불 예정 일시 :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
- 환불대상 : 청약자 중 낙첨자
- 환불방법 :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청약자 본인대표자 명의의 환불계좌와 청약신청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함.
-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, 환불 서류 미흡 등 송금불능 시에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, 시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.
- 청약신청금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 환불 신청 구비서류
  - 청약통장 사용자본주택 구비) – 청약신청서 견본주택, 청약 신청자명 및 연출용 사용부부 환불 구비서류 :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청약신청자 환불 위임용) 1부
  - 인감증명 구비) 대리 환불 청약 구비서류 :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청약신청자 환불 위임용) 1부
  - 인감증명 구비) 상속인 등 외국인등록증, 인감증명서(주민등록증 사본 발행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, 시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.

※ 청약 신청 해당 호실표로 청약신청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고, 청약 신청자명으로 입금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.
– 예시 : 홍길동 청약 시 → '홍길동' 10.8 청약

※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견본주택, 시업자 및 제작대행 현금으로 직접 입금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약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해용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 · 형사상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음.

■ 청약신청 방법

– 견본주택 방문 시 구비서류

구 분	내용
본인 신청 시	• 청약신청서당시 견본주택 내 비치) • 본인 인감도장(도는 사본) • 본인 인감증명서 1부(도는 본인사본상시출력인서 1부) • 주민등록등본 1통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–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(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) –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) •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도는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•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등장 시본청약시청장 명의)
법인 신청 시	• 청약신청서당시 견본주택 내 비치) • 법인 인감도장(시용인감 사용 시 시용인감계 1부 제출) •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• 사업자등록증 1부 •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–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: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(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) •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도는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•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등장 시본청약시청장 법인명의)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, 법인 구인감도장 시용인감 사용 시 시용인감계 1부 제출) 1. 청약자의 인감도장(시용인감 1부)등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(위임인 : 외국인의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) • 인감증명서 1부용도 : 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 위임용) –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(공증)에서 영 인증서에 1 이에 관한 공증증서 • 청약자의 신분증 •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및 도장 –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–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
■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

- 당시 견본주택에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함
- 시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시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이해하고 주변시설 유무, 도로, 소음, 조망, 일조,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이로 인한 책임은 시업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.
- 본 견본주택 출수, 방 등에 따라 입점 후 소음, 진동, 시설물의 일조권,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.
- 시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청약 접수 청약 신청분이 당첨으로 판정 될이후에 대하여 시업주체 본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.
-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(2022.11.10.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되고로 동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
- 시청 접수 시는 해는 본인에게 있으며 시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.
- 당첨자 확인은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함
- 예탁금청약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,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수의계약으로 임의 공급함.
- 청약접수자의 청약신청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.
- 닉명 시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. (단,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의 오류 및 환불불가 계정일 경우 시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)

■ 추첨 및 당첨자 발표

- 일시 : 공개추첨 및 당첨자 발표 2022.11.15. 17:30
- 장소 : 당시 견본주택 내
- 당첨자 선정 : 당첨자 및 순번은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결정, 추첨은 전문상담원 영상 촬영 후 견본주택에서 브리핑
- 당첨자 확인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,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.

■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

- 환불 예정 일시 :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
- 환불대상 : 청약자 중 낙첨자
- 환불방법 :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청약자 본인대표자 명의의 환불계좌와 청약신청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함.
-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, 환불 서류 미흡 등 송금불능 시에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, 시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.
- 청약신청금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 환불 신청 구비서류
  - 청약통장 사용자본주택 구비) – 청약신청서 견본주택, 청약 신청자명 및 연출용 사용부부 환불 구비서류 :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청약신청자 환불 위임용) 1부
  - 인감증명 구비) 대리 환불 청약 구비서류 :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(청약신청자 환불 위임용) 1부
  - 인감증명 구비) 상속인 등 외국인등록증, 인감증명서(주민등록증 사본 발행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, 시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.

Ⅲ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

■ 계약체결

- 청약 당첨 시 계약금 : 분양가의 10%
- 계약체결 장소 :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 견본주택 (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44 / 문의전화 : 1800-0377
- 계약금 납부 : 이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을 실 할 계약자 상명 기재하여야 하며, 이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, 동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여러번 현황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상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 로 간주함.
-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다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, 별도의 통보 없이 임의 분양 할 수 있음.

■ 계약체결 서류 안내

구 분	구 비 서 류
본인 계약 시	• 청약신청 접수증수증 •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생명사용인서 1부 ※ 용도 : 근린생활시설 계약용, 본인사용상시용인서 제출 시 대리 계약 불가 •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–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 신분증(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), 해당자에 한함 • 계약금 납입영수증무통장 입금증
법인 계약시	• 청약신청 접수증수증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•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, 법인인감사용인장 사용 시 시용인감계 1부) ※ 인감증명서 용도 :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• 대표이사 본인 서명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–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대리인 도장 지참 – 국내거소신고증(재외동포),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) _ 해당자에 한함 • 계약금 납입영수증무통장 입금증
제3자 대리 계약시	•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되게준수 포함하여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내용 추가 제출 •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: 근린생활시설 계약 위임용) 1부 • 계약자의 인감도장(시용인감 사용 시 시용인감계 1부) •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인정

- 상기 구비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(2022.11.10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공인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람.
- 단 변경이 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계약 시 외국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함.
- 본 근린생활시설은 개정된 "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"제3조에 따라 2020.2.21.이후 부동산상거래신고 가이랍사는 30일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증이하 을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시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.

■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

구 분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	비 고
분양대금 납부계좌	농협은행	301-0312-1950-81	새연산아파트스쿠모 제2계좌(시업조합	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상명을 필히 기재 ex) 101동 101호 홍길동 : 101-101 홍길동

- 분양대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. 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
- 지정된 분양대금 이외 입금되거나 납부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및 이자에 대하여 시업주체는 본인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.
- 무통장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상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. (예 : 101동 101호 홍길동 → 101-101 홍길동)
- 견본주택에는 현금으로 분양대금 수납을 하지 않으며, 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시업주체 및 시업주체 및 시업자는 책임지지 않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됨.
-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, 착오입금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업주체 및 시업자는 책임지지 않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됨.
-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
■ 계약 시 유의사항

-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임의 분양함.
-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다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임의 분양할 수 있음.
- 당첨 및 계약 체결 후에도 서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것이 판명되거나 본인 확인 결과 만일 주민등록번호 등록 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거나 당첨 및 계약 취소 및 과태료 처해,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됨.
- 주변의 시설으로 인한 건축시방,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소실률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자에게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당첨 근린생활시설의 전매기능 시기는 계약금 전일 및 전매일 당일기재 납부일로 부터 계약일 이전 전매 할 수 없음.
-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중도에 계약포함에 따라 위반금을 공제할 사례 시업주체 공급했다 사례 시 본인 금액에서 청약금 제외 하여 환불함.
- 당첨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시업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.
-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중도에 계약포함 이전 타인금을 공제할 사례 시업주체 공급했다 사정 시 본인 금액에서 청약금 제외 하여 환불함.
-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실 및 면적조정 분양가변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시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중도에 계약포함 이전 타인금을 공제할 사례 시업주체 공급했다 사정 시 본인 금액에서 청약금 제외 하여 환불함.
- 당첨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시업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.
- 계약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• 오피스텔의 임차시기 및 근린생활시설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음.
- 기타 계약조건은 "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함.

■ 중도금 대출 안내

- 본 근린생활시설의 중도금의 경우 총 금융금액의 10% 범위 내에서 신청자당 요청 가능.
- 본 근린생활시설의 중도금 납부기간은 공동주택 3층 입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신 중도금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됨 단 마감 시 연체료가 부과됨)
- 계약자는 중도금 일정 및 납부 방법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도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임의로 시업주체 및 시업자의 의사시행이 아님
-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이후 계약금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 발생이 발생하지 않음.
-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·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(연체료 납부 시 토 ·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)

Ⅳ 유의사항 :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■ 입점예정일 안내

- 입점예정 : 2025년 06월 예정 (정혜한 입점일자는 추후 통보)
- 입점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른 변경될 수 있으며, 공사 중 천재지변 또는 문화재출토, 행정명령,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시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업주체 도는 시업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통보하고 해야 하며 시업주체는 지체상금 지급을 책용하지 않음.
- 계약자가 지급을 납부하고 입점 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등의 경로,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시업주체에게 정구할 수 없음.
- 실 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단일기일 경우 이로써 분양대금을 실 입점시점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,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.

■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

- 하자보수 절차는 "건설사업기본법"에 의거하여 적용됨 • 콘크리트의 폭 0.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함
-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시용공사시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

■ 단지 내외부 여건에 관한 유의사항

1) 공통사항

-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그림 홍보물 견본주택 내 전시된 시용 및 연출용 시설부분 카탈로그 리플렛, 모형도 등 각종 인쇄 자재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며, 시설물의 위치, 규모, 색채 디자인 마감사양, 외외입고물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 또는 행정상인 등에 따라 실제 시용 시 변경될 수 있음. 견본주택의 위치시용 이외는 관련 법규관계법령에 따름. 본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이분리된 복합건축물로 공동주택 입주자와 입점자 간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. 개인 체질 이해 계약자의 오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. 보증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음 해 1월 이후 시용승인 이전에는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용승인 지연사유 발생 시 본인 또한 본 시설물의 시용검사 후 내부 구조, 벽체 설치 등 내부 물리 변경은 불가하며 내부 물리 변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상기 시공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. 본 근린생활시설의 현장 여건 및 기능, 인허가 과정, 구조, 성능, 시공방법 등을 위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. 변경 사항 제외된 조건도, 평면도, 면적, 치수 등 각종 내용사 및 공정진행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본 근린생활시설의 시용승인 전 이의 및 제기를 하실 때에 이의사는 관련법 및 관련 제해 등이 변경될 수 있음. 본 근린생활시설의 해당 도면 및 기타 자료는 시용승인 이전 시용승인 이후 시용승인 이전 시용승인 이후 시용승인 이전 시용승인 이후